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-18조제4항제2호 후단 중 “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”를 “금융채권자 공동관리절차가”로 하고, “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”를 “금융채권자가 채무조정의 일환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⑤ (생략)

⑤ (현행과 같음)